

안 전 검 사 기 준

이륜자전거

부속서 26

제 4 부 유사 산악용 자전거

(Bicycle for General Use similar to [MTB MTB look-alike])

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바퀴의 호칭(지름) 20, 22, 24 및 26의 산악 전용 자전거(MTB)와 유사한 자전거에 대하여 규정한다.(점음식을 포함한다.)

2.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나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

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

KS B 0204 미터 가는 나사

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

KS B 0214 미터 가는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

KS B 0224 자전거 나사

KS B 8105 휴대 전동

KS C 8106 자전거용 발전동

KS M 6525 자전거 및 운반차용 타이어

KS M 6526 자전거 타이어용 튜브

KS R 1092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

KS R 8001 자전거 용어

KS R 8011 자전거용 차체

KS R 8015 자전거용 흙받이

KS R 8016 자전거용 핸들

KS R 8017 자전거용 브레이크

KS R 8019 자전거용 기어 크랭크

KS R 8020 자전거용 페달

KS R 8021 자전거용 체인

KS R 8022 자전거용 프리 퀼 및 작은 기어

KS R 8023 자전거용 허브

KS R 8024 자전거용 스포크

KS R 8025 자전거용 립

KS R 8027 자전거용 손잡이

KS R 8028 자전거용 안장

- KS R 8030 자전거용 리플렉스 반사경
- KS R 8032 자전거용 뒷꼼받이 및 스탠드
- KS R 8033 자전거용 체인 케이스
- KS R 8039 자전거용 종
- KS R 8040 자전거용 자물쇠
- KS R 8042 자전거용 공기 펌프
- KS R 8044 자전거용 타이어 텔브
- KS R 8045 자전거용 변속기
- KS R 8047 유사 산악전용 자전거

3.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R 8001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.

- 3.1 유사 산악 전용 자전거 오로지 일반도로에서 승용할 자전거로서 핸들, 차체, 기어 크랭크 및 타이어 등 종류·형식이 산악 전용 자전거와 유사한 것.
- 3.2 세이프티 혹은 캔틸레버형 젤리퍼 브레이크의 와이어 결단 사고에 대비하여 늘어뜨린 와이어가 바퀴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것을 방호하는 용구.
- 3.3 서스펜션 혹은 차체와 앞바퀴를 결합하는 앞포크 부재로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제(공기 스프링, 금속 스프링 또는 고무 등)에 따라 완화하는 장치.

4. 안전요구사항(성능과 시험방법, 구조 및 모양·치수를 포함한다) 및 결모양 안전요구사항과 결모양은 이 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1부 일반용 자전거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다.

4.1 치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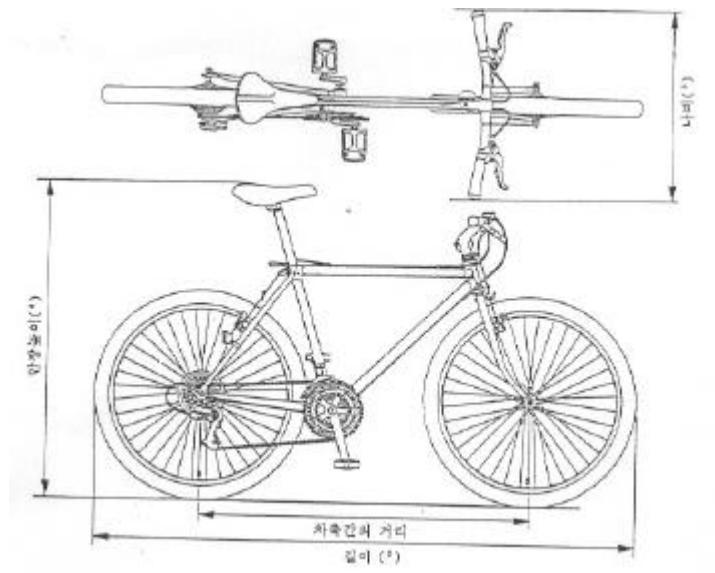


그림 1 치수

주⁽¹⁾ 직진 주행상태에서의 전체길이이며 1900mm 이하.

⁽²⁾ 최대나비로 700mm이하.

⁽³⁾ 시트포스트를 끌어 맞춤 한계표지까지 끌어 올려서 세웠을 때, 앓는면 중앙부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.

4.2 부품의 강도, 구조 및 성능 부품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.

4.2.1 차체의 강도 이 기준의 부속서 1에 따른다.

4.2.2 핸들의 강도 이 기준의 부속서 2에 따른다.

4.2.3 쿼 릴리스 허브의 구조 및 성능 이 기준의 부속서 3에 따른다.

4.2.4 브레이크 와이어의 강도 브레이크 와이어의 인장 및 반복 강도는 이 기준의 부속서 4에 따른다.

4.3 세이프 흑 앞 브레이크에 캔틸레버형 캐리퍼 브레이크를 사용한 것은 세이프티 흑을 준비해야 한다.

다만, 와이어를 사용한 대신 로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.

5. 검 사

5.1 검사로트의 구성 검사로트는 제동방식별, 차륜호칭별, 기어유무별, 후레임 형태·직경·재질별로 구성한다.

5.2 시료채취방법 KS A 3151에 따른다

5.3 시료의 크기 및 할부판정

검사구분	시료의 크기(n)	합격판정갯수(Ac)	불합격판정갯수(Re)
안전검사	1	0	1
정기검사	1	0	1

5.4 검사 항목 유사산악전용 자전거의 검사 항목은 4.안전요구사항, 6.표시 및 7.취급설명서에 따른다.

6. 표 시

6.1 제품의 표시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6.1.1 품 명

6.1.2 종 류

6.1.3 모델명

6.1.4 차체번호

6.1.5 제조년월

6.1.6 제조자명

6.1.7 수입자명 (수입품에 한함)

6.1.8 주소 및 전화번호

6.1.9 제조국명

6.1.10 일반도로 이외에서의 승차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6.2 첨부 카드 등 차종, 제원, 기능, 성능 등을 기재한 카드 등을 보기 쉬운 부위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6.3 바퀴의 고정 확인 앞바퀴에 쿼 릴리스 허브를 사용한 것에는 챔 레버쪽의 앞포크다리에 스티커 등으로 승차 전에 바퀴가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7. 취급설명서 다음에 표시한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명시된 취급설명서를 첨부한다. 다만, 유사 산악 전용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. 그리고, 취급설명서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거나,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큰 글자 또는 색상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7.1 취급설명서를 잘 읽은 후에 보관할 것.

7.2 일반도로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킬 것.

- 7.3 적재하는 물건의 무게와 크기의 제한
- 7.4 올바른 승차 자세
- 7.4.1 타는 사람의 체격
- 7.4.2 안장, 핸들 의 높이 조정 방법
- 7.4.3 핸들스텝과 같이 끼워맞춤 부위의 한계표지를 초과하는 조정은 하지 않을 것.
- 7.5 브레이크의 조작법과 주의
- 7.6 퀵 릴리스 허브의 사용방법(적정 조정 방법, 고정 확인 방법 등)
- 7.7 면속기어 장치의 사용방법
- 7.8 주차시의 주의사항(자전거 방지 등에 관한 주의)
- 7.9 타이어의 공기압
- 7.10 승차 직선의 확인사항
- 7.10.1 앞 뒤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
- 7.10.2 핸들과 앞뒤 바퀴의 고정상태
- 7.10.3 타이어의 공기압
- 7.10.4 기타 필요사항
- 7.11 점검, 조정의 시기, 점검의 부위와 방법
- 7.11.1 초기점검은 2개월 이내에 할 것.
- 7.11.2 매 1년마다 그리고 이상을 느낄 때는 즉시 점검을 받을 것.
- 7.12 브레이크 와이어의 교환 시기
- 7.13 야간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
- 7.13.1 전조등과 후미등의 점등 확인
- 7.13.2 반사경의 파손여부 또는 유지상태
- 7.14 비, 눈, 바람 때의 주의사항
- 7.15 주 유
- 7.15.1 주유 부위
- 7.15.2 브레이크 제동면에는 주유 불가
- 7.16 보관상의 주의사항
- 7.17 기타 필요한 주의사항

부속서 1 차체의 강도

1. 내진성 차체를 부속서 1 그림 1과 같이 진동시험기에 걸고, 부속서 1 표 1에 표시한 시험조건으로 수직으로 상하운동을 가했을 때, 차체 각 주위에 파손이나 심한 변형 또는 비틀림이 생기면 안된다.

부속서 1 그림 1 내진성

부속서 1 표 1 내진성 시험조건

차체의 종류	하중(무게)kg				진동수 Hz	가진부의 가속도 m/s ² (G)	가진횟수 회
	헤드부	시트부	행어부	계			
다이아몬드형 기타의 모양	10	50	25	85	6.6~10	22{2.2}	150000

- 비 고 1. 차체는 부속서 1 그림 1 과 같이 앞뒤 허브축의 위치가 수평이 되도록 조립한다. 다만, 앞뒤 바퀴지름이 각각 다른 설계의 차체인 경우, 그 각각의 바퀴의 접지점이 수평이 되도록 조립하고 시험한다.
2. 차체에 조립되는 시트포스트를 사용하여 그것을 끼워맞춤 한계표지의 위치에 고정하고 시트부에 대한 하중은 부속서 1 그림 2와 같이 안장형의 하중대를 시트부에 부착하고 매달림쇠에 원형주를 좌우로 늘어뜨려 하중대, 매달림쇠 및 원형주의 합계를 하중(질량)으로 한다. 하중대는 시트포스의 상단에서 중심선상 20mm 아래쪽에서 접쇠로 시트포스트에 고정한다.
3. 행어부에 대한 하중은 원형주를 좌우로 늘어뜨려서 행어부에 고정한다.
4. 헤드부에 대한 하중은 부속서 1 그림 3과 같은 쇠붙이를 사용하여 추를 추 받침대의 밀면과 고정너트의 윗면과의 간격이 없어지는 위치에 고정한다.
5. 진동수는 6.6~10Hz의 범위에서 공진주파수를 피하여 임의로 선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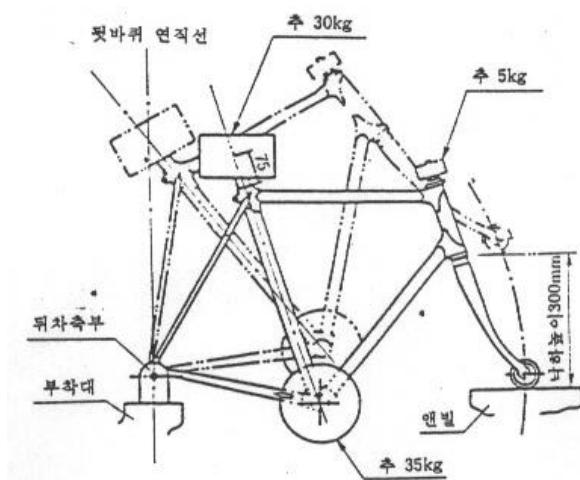
부속서 1 그림 2 시트부에 대한 히중부하용구 부속서 1 그림 2 헤드부에 대한

2. 내전도 충격시험 1.의 시험에 사용한 경량틀러를 차맞추고 부속서 1 그림 4와 같이 차체가 뒤차축부를 중심으로 하여 연직면 상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부착대에 장착한다. 다음 앞포크를 전후 차축이 수평이 되도록 평평한 앤빌 위에서 헤드부에 5kg, 시트부에 30kg의 추(모양의 보기를 부속서 1 그림 5에 나타낸다)를 중심이 세운 파이프의 위끝에서 세운 파이프중심선의 연장선상 75mm의 위치에 고정한다. 이상태로 차체를 낙하높이(⁴) 300mm까지 끌어 올렸다가 앤빌위에 낙하(두번 반복)했을 경우 차축간 거리의 영구 변형량이 60mm 이하이고 각 부위에 현저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.

주 (⁴) 추의 중심이 뒤차축의 연직선상에 이르렀을 때는 그 높이로 한다.

부속서 1 그림 4 차체 전도 충격시험

단위 : m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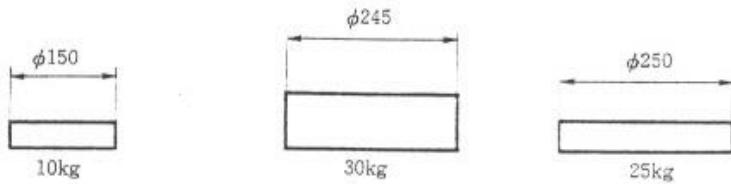
부속서 1 그림 5 추(참고)

단위 : mm

헤드용(5kg)

시트용(30kg)

행어용(17.5kg×2)



부속서 2 핸들의 강도

핸들을 사용 상태의 자세에서 스템을 70°각도로 하고 끼워맞춤 길이로 진동대에 고정하여 부속서 2 그림 1과 같이 바의 좌우끝에서 40mm의 위치에 각각 추를 고정하고 부속서 2 표 1의 조건으로 진동을 가했을 때 각 부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또한, 가진부의 최대가속도와 진동수 및 진폭의 관계를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.

$$a = 0.4an^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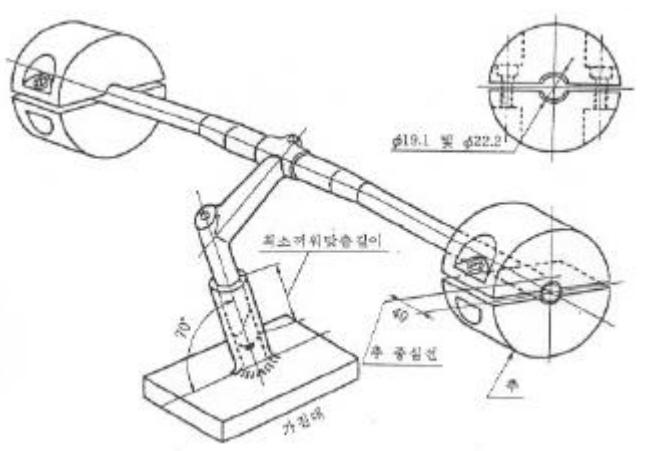
여기에서 a : 가속도(m/s^2)

 a : 반진폭(cm)

 n : 진동수(Hz)

부속서 2 그림 1 내진성 시험의 추 고정방법

단위 : mm



부속서 4 표 1 내진성 시험의 진동조건

무(⁵) kg	가진부의 최대가속도 m/s ² (G)	진동수(⁶) Hz	가진횟수 회
8	20{2}	6~10	100000

주(⁵) 부착 쇠볼이를 포함한다.

(⁶) 공진을 피할 수 있다면 어느 진동수라도 좋다.

부속서 3 퀵 릴리스 허브의 구조 및 성능

퀵 릴리스 허브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캠 레버의 조작력은 앞끝에서 5mm의 위치에 가하는 것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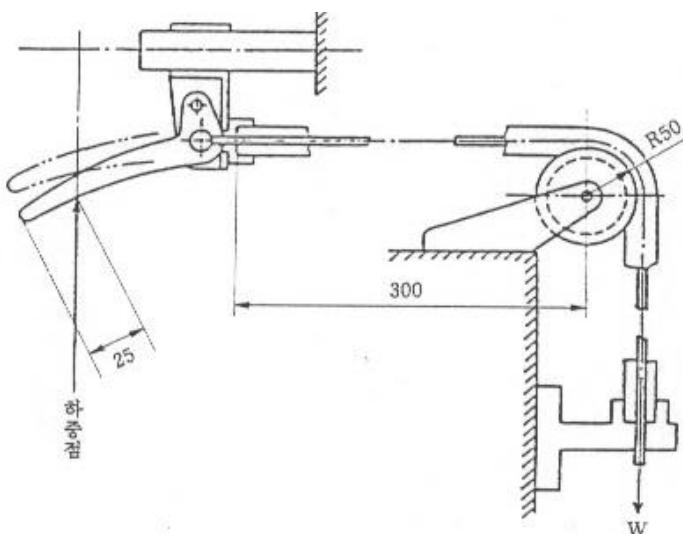
- (1) 퀵 릴리스 허브는 적정한 바퀴의 고정력이 얻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캠 레버는 장치가 고정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.
- (3) 퀵 릴리스 허브의 캠 레버를 고정위치에 조작하여, 차체에 고정된 앞바퀴 및 뒷 바퀴의 허브축에 대하여 떼어내는 방향으로 2300N의 힘을 좌우 균등하게 걸리도록 30초 동안 가했을 때 허브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. 다만, 고정력의 측정은 인수·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분명한 데이터에 의하여 캠 레버의 고정 조작력을 측정하여도 좋다.
- (4) 적정한 고정력을 얻기 위한 조작력은 200N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(5) 고정위치에서의 조임 해제력은 50N이상이어야 한다.
- (6) 캠 레버가 고정위치에 미칠 때까지 250N의 퀵 방향의 조작력을 가했을 때, 각 부위에 파손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

부속서 4 브레이크 와이어의 강도

- 인장강도 브레이크 와이어의 한쪽 및 니플부의 절단 하중은 니플부를 고정하고 한쪽을 인장했을 때 2kN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반복강도 브레이크 레버에 브레이크 와이어를 짜맞추고 반지름 50mm의 원통시험기에 부속서 4 그림 1과 같이 부착하고 15kg(무게)의 추를 늘어뜨린 후 브레이크 레버를 25mm의 스트로크로 매분 60회의 속도로 100000회 당겼을 때, 니플부가 탈락하거나 또는 안쪽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. 다만, 브레이크 레버와 니플부의 끼워맞춤부 및 브레이크 와이어에는 윤활제를 칠해서 한다.

부속서 4 그림 1 브레이크 와이어의 반복강도 시험

단위 : mm



지 정 : 동 상 산 업 부 령 제 62호(1997. 1.19)

제 정 :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- 330호(1997.11.20, 시행일:1997.12.1)

개 정 : 기술 표준 원 고시 제2001- 371호(2001. 7.10)

개 정 : 기술 표준 원 고시 제2002-1675호(2002.12.14)